

예술문화대제전 운영내규

제정 2018. 5.10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예술문화대제전 규정 제20조에 따라 예술대전을 체계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예술대전 운영

제2조(예선대회) 한국예총 각 연합회는 예술문화예술대전 참가 광역시·도 대표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경연을 개최하여야 한다.

제3조(참가신청) 광역시·도별 예선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대회 참가요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해당 연합회장이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술대전참가)

- ① 예술대전은 각 연합회 신청한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하며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.
- ② 예술대전 참가 요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.

제5조(예술대전 방법) 예술대전은 광역시·도 경연으로 한다.

- ① 경연 참가순서는 광역시·도별 연합회장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국예총에서 결정한다.
- ② 예술대전의 모든 경연심사 및 진행 결과는 한국예총이 제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, 경영심사 결과는 해당 종목의 심사위원장이 확인·서명을 해야 한다.

제6조(출입관리) 한국예총은 경연장 질서를 유지할 위해 광역시·도 대표 및 관련임원, 기자단, 관람객 등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을 가지며 이를 위해 출입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3장 예술대전 심사

제7조(심사위원 구성) 예술대전의 심사위원은 해당 종목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심사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2. 심사위원은 2년 연속 심사할 수 없다.
3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한국예총에서 선임하며, 경연당일 발표한다.

제8조(심사위원 자격) 예술대전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종목별 한국예총 회원협회 이사장과 연합회장이 추천하며 한국예총 회장이 위촉한다.

1.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
2. 대학교 해당분야 실기, 이론, 평론 교수
3. 해당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경력 10년 이상인자
4. 해당분야 종사 경력 20년 이상인자
5. 기타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가

제9조(심사 항목 및 채점) 예술대전의 종목별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채점한다.

1.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채점표는 제외하며,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을 최종 점수로 한다.
2. 종목별 심사위원장은 경연종료 후 즉시 채점표를 운영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3. 채점결과가 동점일 경우 해당종목의 대표로 참여한 인원이 많거나, 최연소 참가자가 있는 광역시·도 대표를 상위로 한다.
4.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종목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.

제10조(소청처리) 예술대전 관련 소청은 「대한민국 예술대전 운영 규정, 제6장의 소청 및 처리」를 준용한다.

제4장 시상

제11조(시상) 예술대전 시상은 각종목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.

1. 최우수상
2. 우수상
3. 장려상
4. 기타 시상

제12조(시상방법) 시상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각 종별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은 상장과 시상금을 각각 수여한다.
2. 기타 조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대한민국 예술대전 규정에 따른다.